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3나5290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변 론 종 결 2023. 5. 19.

판 결 선 고 2023. 6. 23.

제1 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2가소16824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2. 7. 18.경 자녀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이 고장 나서 수리 중인데, 인터넷으로 신청할 것이 있으니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및 신분증을 사진 찍어서 보내 달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뒤이어 받은 원격제어 프로그램인 팀뷰어(Team Viewer) 파일을 설치한 후, 이를 실행시켜 나온 숫자 9자리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나.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취득한 원고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위 가.항과 같은 날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C 대출 2,800,000원을 받은 후, 그 중 2,600,000원을 피고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위 가.항과 같은 날 E이라는 P2P 코인 거래 사이트를 통해 ‘F’이라는 사람에게 2,600,000원 상당의 USDT 코인을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2,6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부당이득반환청구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의 태도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법리는 메신저피싱에 사용되는 예금계좌 또는 통장의 명의자와 그에 대한 송금의뢰인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송금의뢰인인 원고와 예금계좌 또는 통장의 명의자인 피고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성명불상자 내지 ‘F’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줄 당시 그것이 범죄행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성명불상자의 메신저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사기방조로 인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금 2,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데,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송금한 금원이 피고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그 금액 상당의 실질적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앞서 든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2,600,000원은 피고가 'F'이라는 사람에게 USDT 코인을 판매하고 받은 대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원고가 그 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 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159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2230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F’ 내지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줄 당시 그것이 범죄행위에 사용될 것을 알았다거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는 E이라는 P2P 코인 거래 사이트를 통해 ‘F’이라는 사람에게 2,600,000원 상당의 USDT 코인을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2,600,000원을 송금 받으면서 피고의 계좌번호를 ‘F’이라는 사람에게 알려주었을 뿐, 메신저피싱 범행과 관련하여 직접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② 나아가 피고가 성명불상자의 원고에 대한 메신저피싱 범행과 관련하여 사기방조 등으로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증거도 없다.

③ 피고가 ‘F’이라는 사람에게 피고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것 자체로 인하여 원고가 잘못된 신뢰를 형성하고 금원을 송금한 것이 아니라, 원고는 성명불상자의 기망행위에 속아 성명불상자의 요구대로 그로부터 받은 원격제어 프로그램인 팀뷰어(Team Viewer) 파일을 설치한 후 이를 실행시켜 나온 숫자 9자리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준 것으로, 원고가 돈을 입금한 데에 피고가 직접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그 밖에 피고의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원고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F’이라는 사람에게 피고의 계좌번호를 알려줄 당시 그것이 USDT 코인 판매대금을 받는 것을 넘어 사기범행에 이용된다거나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예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송승훈, 판사 고종영, 판사 김동규